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방위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54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피해 지원의 대상(안 제54조의3)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의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를 규정

나. 피해 지원의 기준(안 제54조의4)

안 제54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피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재산피해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지원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도록 규정

다. 피해 지원 예산 확보(안 제54조의5)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 지원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도록 규정

라. 피해 신고(안 제54조의6)

피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피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

마. 피해 조사(안 제54조의7)

신고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지원 금액 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소음 방송 피해 조사 및 신고(안 제54조의8)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는 소음영향도 등의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안내하여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접수 받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피해 대상 및 금액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사.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4조의9)

피해 지원 정책과 예산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구성하도록 규정

아. 국비 지원(안 제54조의10)

피해 조사를 완료한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재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자. 피해 지원 금액 지급(안 제54조의11)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국비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부터 제54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피해 지원의 대상)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 위해(危害)행위를 말한다.

1. 무인자유기구
 2. 소음 방송
 3. 총·포격
 4. 드론
 5. 기타 이에 준하는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제54조의9에 따른 피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4(피해 지원의 기준)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4조의3제1항 각 호로 인한 생명, 신체 피해
2. 제54조의3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로 인한 재산피해

② 제1항의 피해 지원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피해 지원금의 한도·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4조의5(피해 지원 예산 확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 지원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 지원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4조의6(피해 신고) ① 제54조의3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여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신고서를 피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의3제1항제2호로 인한 피해 신고는 제54조의8에 따른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피해 신고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7(피해 조사) ① 제54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 발생 지역과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등이 다른 경우는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조사 결과는 생명, 신체피해 피해 신고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조사결과는 재산피해 소유주의 주민등록지 또는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지원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피해 조사를 완료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4조의8(소음 방송 피해 조사 및 신고) ① 제54조의3제1항제2호가 발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장·군수(이하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라 한다)는 소음 방송 피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음측정 및 소음영향도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지원 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해당 지역의 거주민에게 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관보 게재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피해 현황, 제2항에 따른 피해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피해 조사 결과와 피해 현황에 따른 피해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원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4조의9(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제54조의3과 관련된 피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제54조의3에 따른 피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제54조의3에 따른 피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감정평가사·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 또는 제54조의3에 따른 피해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제54조의3에

해당하는 피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10(국비 지원) ① 제54조의7에 따라 피해 지원을 위한 조사를 완료한 시·도지사는 피해 현황,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의8에 따른 소음 방송 피해에 따른 국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소음 수준, 소음영향도 등 소음 방송 피해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조사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또는 공동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국비 지원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의11(피해 지원 금액 지급) ① 제54조의10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4조의10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피해 지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54조의10에 따른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4조의7 및 제54조의8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한 후에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피해 지원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4조의3(피해 지원의 대상) ①</u> <u>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 위해(危害)행위를 말한다.</u> <u>1. 무인자유기구</u> <u>2. 소음 방송</u> <u>3. 총·포격</u> <u>4. 드론</u> <u>5. 기타 이에 준하는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제54조의9에 따른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u>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54조의4(피해 지원의 기준) ①</u> <u>법 제32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제54조의3제1항 각 호로 인</u>

<신 설>

<신 설>

한 생명, 신체 피해

2. 제54조의3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로 인한 재산피해

② 제1항의 피해 지원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피해 지원금의 한도·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4조의5(피해 지원 예산 확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 지원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 지원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4조의6(피해 신고) ① 제54조

의3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여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행

<신 설>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신고서를 피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의3제1항제2호로 인한 피해 신고는 제54조의8에 따른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피해 신고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7(피해 조사) ① 제54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 발생 지역과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등이 다른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조사 결과는 생명, 신체피해 피해 신고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조사결
과는 재산피해 소유주의 주민
등록지 또는 「지방세법」 제
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지원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피해
조사를 완료한 시장·군수·구청
장은 피해 지원 금액 등을 포함
한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피해 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4조의8(소음 방송 피해 조사

및 신고) ① 제54조의3제1항제2호가 발생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장·군수(이하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라 한다)는 소음 방송 피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음측정 및 소음영향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지원 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해당 지역의 거주민에게 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관보 게재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피해 현황, 제2항에 따른 피해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피해 조사 결과와 피해 현황에 따른

<신 설>

피해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원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4조의9(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제54조의3과 관련된 피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행
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
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학교에서 제54조
의3에 따른 피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
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제54조의3에 따른 피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
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
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
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감정평가사·손해
사정사와 같은 전문가 또
는 제54조의3에 따른 피해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신 설>

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제54조의3에 해당하는 피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10(국비 지원) ① 제54조의7에 따라 피해 지원을 위한 조사를 완료한 시·도지사는 피해 현황,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의8에 따른 소음 방송 피해에 따른

<신 설>

국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소음 수준, 소음영향도 등 소음 방송 피해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조사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또는 공동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국비 지원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의11(피해 지원 금액 지급)

① 제54조의10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4조의10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피해 지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54조의10에 따른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4조의7 및 제54조의8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한 후에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피해 지원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연 락 처	(044) 205 - 4367